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3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이성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
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
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
박성연, 박영한, 서상열,
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
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
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
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
이희원, 장태용, 최민규,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39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위원회 설치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정관광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(안 제7조 제5항)
- 나. 위원회 임기규정을 삭제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(종전의 제8조 삭제)
- 다. 위원회의 회의 소집방법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변경[안 제9조(종전의 제10조) 제1항~3항]

라. 종전의 제8조 삭제에 따른 조문 이동(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제8조를 삭제하고,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.

제9조(종전의 제10조)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적위원”을 “구성위원”으로 한다.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</u> <u>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</u> <u>해산한다.</u>
제8조(위원회의 임기) ① 당연직 <u>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</u> <u>는 기간으로 한다.</u> <u>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</u> <u>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</u> <u>임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 제8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제9조 (생 략)	제9조(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)
제10조(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<u>소집하고, 위원장이 의장이 된</u> <u>다.</u> <u>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</u> <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</u> <u>집한다.</u> <u>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</u> <u>집요구가 있는 때</u> <u>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</u> <u>고 인정하는 때</u> <u>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</u>	<u>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</u> <u>요한 경우에 소집한다.</u> <u>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</u> <u>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</u> <u>지 회의 일정과 안전 등을 위원</u> <u>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</u> <u>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</u> <u>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③ ----- 구성위원 -</u>
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 ~ ⑧ (생략) <u>제11조</u> ~ <u>제15조</u> (생략)	----- ----- ---. ④ ~ ⑧ (현행과 같음) <u>제10조</u> ~ <u>제14조</u> (현행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)
--	---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시 공정관광위원회의 비상설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참고로 위원회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변화(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)를 검토¹⁾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(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) 문의 및 각종 정보확인 결과 별다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- 1) 서울시 관련부서(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) 문의결과 2022년 1회(서울관광 활성화 계획 및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논의) 개최 후 정기적으로 개최된 바 없어 향후 **안전 발생 빈도가 지급과 같은 추이일** 경우 추가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

- 다만 향후 공정관광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관련 **안전이 증가할** 경우 **추가재정소요 발생의 여지**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**안전 증가**를 판단할 만한 **합리적인 요소가 없어** 고려대상에서 **제외함**

[참고] 서울시 공정관광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사례

가. 건 명 : 서울시 공정관광위원회 참석수당 지급

나. 회의일시 : 2022. 12. 19.(월) 10:00 ~ 11:30

다. 지급대상 : 공정관광위원회 위원 6명

라. 지급금액 : **금 900,000원**(금구십만원)

- 산출내역 : 150,000원(2시간 미만)×6명 = 900,000원

마. 지급방법 : 지급대상 명의 계좌로 입금 처리

바. 예산과목 :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,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,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강화,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* 자료 : 서울시 관광체육국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(공정관광위원회)(관광정책과-29201)